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형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318 발의연월일: 2020. 7. 2.

발 의 자:이형석·홍익표·양기대

김남국 · 안규백 · 이수진

김영배 · 진성준 · 김경협

한병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, 이에 따라 경찰청은 인권교육의 실시, 범죄피해자 보호, 인권위원회 및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단의 운영 등 인권보호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. 그러나 현행법상 경찰의 인권보호에 대한 표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경찰의 인권보호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고자 함(안 제4조).

법률 제 호

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

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"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·중립을 지켜야 하며"를 "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며,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·중립을 지키고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권한남용의 금지) 국가경찰	제4조(권한남용의 금지)
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	
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	
권리를 존중하고, <u>국민 전체에</u>	<u>기본적 인권을</u>
대한 봉사자로서 공정·중립을	보호하며, 국민 전체에 대한 봉
<u>지켜야 하며</u> , 부여된 권한을 남	<u>사자로서 공정·중립을 지키고</u> -
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	